

공 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16. 02. 03.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송죽동 177-4번지
3. 도로길이 : 6.933 m
4. 도 로 폭 : 0.9m~3.7m
5. 도로면적 : 12.0 m²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79 외1필지 상의 건축(신축)허가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송죽동	177-4	대	71	12	59	유○○	
합 계			71	12	59		

9. 공고기간 : 2016. 02. 03. ~ 2016. 03. 03.(30일간)
10. 공고방법 :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11. 기타사항

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/성명	시설8급 정혜숙	전화번호	031-228-5237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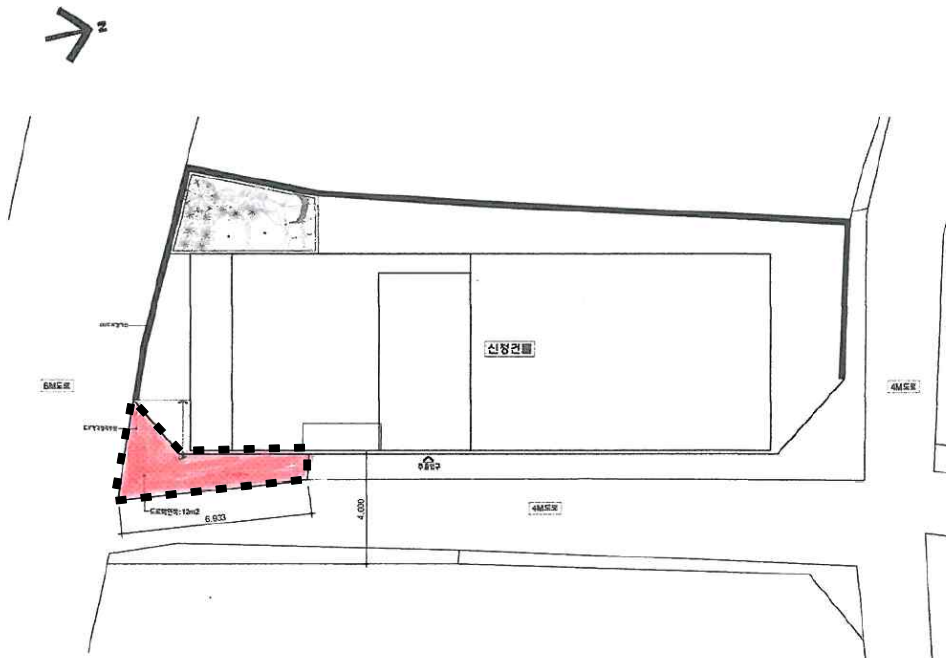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<임의>